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부산저축은행비리 대출브로커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피고발인 및 관련자 즉시 소환조사 촉구
- 尹, “차명 SPC에 대한 PF대출만 수사대상이었다” ... 본인이 직접 ‘일반 PF대출’도 2건 기소
- 尹,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 “윤석열 주임검사와 커피 마시고 수사대상서 제외된 것 자랑” 측근들 증언 나와
- 민주당, “대선 이후에도 반드시 특검 통해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고발 취지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범조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직무유기를 범한 중대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를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부정 당선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피고발인의 중대 비리 의혹이 영원히 은폐될 위험이 있어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내릴 것”임을 경고하며 피고발인에 대한 즉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원단 소속 이동일 변호사를 통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윤 후보는 2021.12.14. 관훈클럽 토론회와 2022.2.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부산저

축은행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조우형이 연루된 ‘대장동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건만 기소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저축은행 경영진의 차명 SPC에 대한 PF대출만 수사대상이었고 일반 PF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이라고 재차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당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지원부의 공동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 분류 오류’ 가 지적되었고, 피고발인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들 중에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SPC가 아닌 일반 PF대출 사건이 두 건이나 더 있었다” 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발인이 기소한 일반 PF대출 사건 두 건은 대출금액이 각각 약 169억 원, 약 3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연루된 대장동 주택건설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만 1,155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의 대출비리” 였다는 점과 “결국 조우형은 나중에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실형선고를 받았다” 는 점에서 “피고발인의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거짓 해명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피고발인이 제2차 TV토론에서 조우형에 대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고 발언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우형 씨 주변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 당시 1차 조사에서 호되게 당한 후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를 소개 받았고, 전관인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한 후에는 윤석열 주임검사와 함께 커피까지 마시며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무용담처럼 주변에 얘기했다’ ” 고 적시하며, “이는 남욱의 최근 검찰 진술과도 일치되는 내용이어서 피고발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 인용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고 판시했다(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대장동 부실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①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㉔